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노력주의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 석 준

노력주의

지도교수 김 현 섭, 송 지 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 석 준

이석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정호근 (인)

부위원장 김현섭 (인)

위 원 송지우 (인)

국문초록

노력주의는 **개인의 노력 가능 역량 하에서 그가 실제로 사회의 경제 체제에 투여한 노력 정도에 따라 그에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경제적 분배 이론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소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주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 투입을, 모두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상대적인 투입값**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이를 경제 체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기여로 간주한다. 그 후 이러한 개인의 기여에 대하여 경제 체제의 산출물을 구입할 수 있는 통화로서의 **소득**을 보상한다.

노력주의는 경제적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 운의 영향 중 노력을 구성하는 것은 계산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 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대로의 노력을 측정해 그에 비례해 각자에게 경제적 몫을 할당한다. 노력 능력이라는 것이 꼭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자유의지 개념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이론적으로 여전히 각 개인은 차등이 있는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력주의에서는 각자의 노력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를 인정한다. 노력주의에서는 운 평등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둘러싼 자연적 재능, 사회적 배경, 가정환경 등이 운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운적 요소 대부분에 관하여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력 능력의 발현과 존재는 개인의 결정과 완전히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력 능력만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능력 등 운적 요인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주의는 개념적으로 운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와의 비교 속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운 평등주의의 최신 논의들에 비하여 여러 이론적, 실천적 장점을 지닌다.

주요어 : 노력주의, 운 평등주의, 능력주의, 노력, 소득, 분배정의
학 번 : 2017-25504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노력주의 논증 ····· 4
제 1 절 개념과 특징 ····· 4
제 2 절 적용 단계, 범위, 시기 ····· 7
제 3 절 대원칙 논증 ····· 9
제 4 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 13

제 3 장 이론적 위치 짓기 ····· 17
제 1 절 운 평등주의의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 ····· 17
제 2 절 존 로머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평탄화 이론 ··· 21

제 4 장 남은 문제들 ····· 26

제 5 장 결론 ····· 36

참고문헌 ····· 38
Abstract ····· 40

표 목 차

[표 1] ····· 9
[표 2] ····· 10
[표 3] ····· 11

그 림 목 차

[그림 1] ····· 15
[그림 2] ····· 15

제 1 장 서론

노력주의(effortism)[1]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되, 각자의 노력에 따라 보상받자(From each according to one’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one’s effort)”는 경제적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 이론이다. “**노력한 만큼 보답 받는다**”는 이상에 따라, 자연적 재능 혹은 사회적 배경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에 대한 보상이 개인의 노력에 상응하도록 하는 경제 분배 이론이다. 노력주의는 사회 전체의 범위에서 경제적 분배가 운의 요소의 영향이 아니라 노력 투입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목적으로 한다.[2]

노력주의 하에서는 **사회의 경제 체제**의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신의 역량에 따라 노력한다. 사회의 경제적 체제에 “각자가 역량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로 노력하느냐”하는 상대화된 값으로서의 투입(input)을 넣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reward)을 받게 되므로 많은 경우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구현된다. 다시 말해, 노력주의는 개인에 따라 다른 노력 투입량을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한다. 즉, 노력 투입량을 상대적인 투입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경제 체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기여로 보고, 이러한 기여에 대하여 경제 체제의 산출물을 구매할 수 있는 통화인 소득을 보상한다. 물론, 노력 역량은 많은 경우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느냐 하는 **노력 정도**에 의해 경제적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주의는 평등주의적인 기획으로서, 마찬가지로 평등주의의 일종인 능력주의(meritocracy)나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와의 비교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것들과 일정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지닌다.

---

1) 본고는 2020년도 제5회 서울대학교 학봉상 학술대회의 수상작인 “새로운 운 평등주의: ‘선택의 장막(Veil of Choice)이론’과 ‘운 평등주의적 능력주의’” 중 자체 서술한 부분을 발전시켜 작성하였다.

2) 물론 노력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운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여기서 운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노력에 대한 운의 영향이 아닌 여타 운의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신분적·사회적 배경이 아닌, 개인이 지닌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결과에 의해 한 사람이 가져야 할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3] 다시 말해, 능력주의는 개인이 사회적·경제적 체제에 얼마나 메리트(merit)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메리트(merit)라는 **결과** 그 자체에 상응하여(proportional) 개인에게 경제적 부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능력주의는 신분제 사회의 공고한 벽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사회적 계층의 이동을 가능케 하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져왔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따르면 신분의 영향은 배제되더라도 임의(random)적으로 부여되는 여타의 사회적 배경이나 자연적 재능에 의하여 사람의 능력이 형성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이 경제 체제에 가져오는 메리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배제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운 평등주의는 운에 의하여 정해진 요소가 아닌 오로지 개인이 그 책임(responsibility)을 지는 선택(choice)만이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분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4] 운 평등주의에 따르면, 운의 요소(재능, 환경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하여 개인적 삶의 경제적 전망 전반이 결정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운 평등주의는 이러한 운의 영향이 배제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운 평등주의에 따르면 개인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 선택 그

---

3)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능력주의 외에도 업적주의라는 번역어가 쓰일 수 있다. merit이라는 것은 분배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투입의 측면에 집중하면 merit을 능력으로, 산출의 측면에 집중하면 이를 업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노력주의에서는 노력 능력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논증을 전개하기에 그 논의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능력이라는 단어를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Young, M. D.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Transaction Publishers.

4) Cohen, G. A. (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pp. 906 - 944., *Sovereign Virtue: Equalit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등.

자체가 아닌 것으로서의 신체적 능력, 지능, 노력 등 - 로 인하여 생산된 재화에 대해서 개인은 그 어떤 재산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운 평등주의 기획의 핵심적 주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특정한 요소들, 예컨대 개인의 노력에 관하여서는 최소한 그로 인한 결과만큼은 개인이 재산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 평등주의는 이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이론상 어떤 이들이 무책임하게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운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노력하지 않는 자들도 비교적 많은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소위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도 용인해야만 한다.[5)]

반면 1) 노력주의는 능력주의와는 다르게 개인의 총체적인 능력 그 자체나 그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서 그에게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 않음으로써, 임의적인 운의 요소에 의하여 경제적 분배가 영향을 받는 면을 최소화시킨다. 2) 또한 노력주의는 일반적인 운 평등주의와는 달리, 운의 요소에 의한 영향 중 공정성을 위하여서는 분배의 계산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다. 노력주의는, 운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에 의한 영향 중 특정한 종류의 영향 - 노력과 무관한 운의 영향 - 만을 소득 분배의 계산 과정에서 배제하며, 노력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self-ownership)**를 인정하여 공정한 경제적 분배를 기획한다.[6)] 요컨대 노력주의는 운의 영향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관한 능력주의와 운 평등주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스펙트럼 위의 어딘가에 위치하여 공정한 경제적 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노력주의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대원칙: 개인의 노력 가능 역량(capacity) 중 그가 사회의 경제 체제에 실제로 투여한 노력 정도에 따라 그에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

---

5) Anderson, Elizabeth. (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 pp. 287 - 337., White, S. (2007). *Equality* (Vol. 12). Polity.

6) 노력주의에서의 "개인"은 외부의 자연력 등에 의하여 불균등하게 의지가 촉발되는 행위자로 전제된다.

제 2 장 노력주의 논증

제 1 절 개념과 특징

대원칙은 개인의 노력 가능 역량에서 그가 어느 정도를 실제 노력으로 사회의 경제 체제에 투여하는지에 따라 그에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 먼저, **노력이란 일(혹은 일을 위한 준비)을 하기 위해 개인이 발휘하는 일련의 의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은 이를 유발하는 모든 운적 요소와 누적된 의지의 총체적 복합체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복합체를 **노력 능력**이라 칭한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표현 그대로 특정한 "노력의 능력" 혹은 "노력 재능"이 별도로 실존한다는 점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아니며, 노력주의에서는 단지 노력에 대한 총체적 유발 요인이 있다는 점만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이 총체적 복합체가 결국 개인의 의지 발휘로써 노력으로 발현되므로, 총체적 복합체가 한 개인을 거쳐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노력 능력이라 칭하는 것이다.[7]

---

7) 이론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노력 능력의 발휘는 1) 시간 2) 체력(신체적 힘) 3) 정신적 에너지(정신적 힘) 등의 발휘 정도의 총체인 것으로 구성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시간, 체력, 정신적 에너지의 경우 각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각 요소를 단순 합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1)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계산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위 말하는 업무 시간 등을 포괄한다. 2)는 그러한 업무에 쓰이는 신체적 힘이나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하여 어느 정도의 열량이 소모되었는가 등을 말한다. 3) 정신적 에너지의 투여 정도는 어느 정도로 고되게 느껴지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학문인 철학을 하는 천재 철학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철학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하루의 많은 시간을 철학 연구에 집중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1) 시간 투여량 2) 체력의 소모 정도는 높을 것이다. 반면 3) 정신적 에너지의 경우, 그에게 철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므로 그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적을 것이다. 한편, 체력에 있어서, 집중력을, 예컨대 수치로 환산하여 100 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노력 가능 역량이란 한 사람이 일에 투여할 수 있는, “노력의 의지를 낼 수 있는” 노력 능력의 발휘 정도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즉, 모든 노력 가능 역량을 투여한다는 것은 개인이 온 힘을 다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의 경제 체제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한계까지 일하는 것**이다.

노력 가능 역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연적 재능을 포함한 운의 요소에 의하여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량 내에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주의의 대원칙은 동일한 정도의 노력을 투입한 사람은 동일한 소득을 얻도록 보상한다. 소득은 각 개인이 속한 경제 체제에서 상호 호환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노력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노력 가능 역량 중 일부를 경제 체제에 투여하고 그 투여 정도에 의하여 그의 소득이 정해진다. 대원칙에 한정하여 보면, 노력이 아닌 그 어떠한 외적 요소도 분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원칙이 능력주의와 공유하는 일부 특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분배 정도가 개인의 노력할 수 있는 능력(혹은 능력으로 칭해지는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능력주의는 신분·사회적 배경이 아닌, 능력에 의해 한 사람이 가져야 할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인데, 일반적인 능력주의는 ①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과 ② 각자의 응분(desert)에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 목표로 삼는다.[8] 노력주의는 이 중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이론적 목적은 어느 정도 공유하지만, 노력 자체가 운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꼭 응분[9]에 합당한 대

과 50 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자가 50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과 후자가 25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식의 계산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노력 투여 정도가 결정된다.

8) Daniels, Norman. (1978). Merit and Meritocrac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7: 206 - 223., Sher, G. (1987). *Dese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9) 혹은 책임.

가를 주는 논리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투입**이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개인이 스스로 수행할 때 다른 일에 비해 사회의 경제 체제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가 비교적 적은 일을, 그 일이 흥미가 없어 하기 싫음에도, 단순히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자신이 하기 싫은 행위를 비교적 생산성 없이 반복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는 초등학교 수준의 사칙연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증명하는데 자신의 가용한 모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 체제에 노력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노력주의의 입장에 정확히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적 생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노력에 한하여 그 가치만을 인정하는 이론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원칙에는 **실제로 사회의 경제 체제의 생산성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력에 임하여야 한다는 세부 원칙이 전제된다.

한편 누군가는 흥미가 있어서 하는 일이라도, 이를 통해 실제 사회의 경제 체제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소득으로 보상될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물론, 생산성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과 실제로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사회에 궁극적으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생산성에 기여할 것을 소득 보상의 조건으로 내건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기약 없이 노동을 해야 하고, 결국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여의 의도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서 “기여의 의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개인이 온전한 기여를 할 때까지 실수를 할 수 있는 **틈**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 경제가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 2 절 적용의 범위, 단계, 시기

그렇다면 노력주의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노력주의에 따라서 사회적·문화적 불평등도 규율되는가?

노력주의는 오로지 경제적 소득 분배의 영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회의 경제 체제에 얼마나 노력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결과로서, 그에 대한 보상인 소득을 부여하는 것이다. 노력주의는, 경제적 차원에서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노력에 따라, 사회의 경제 체제에서 통화로 쓰이는 보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위신, 명예, 권력, 영향력 등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더 주어지거나 덜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함축하지 않는다. 노력주의는 그 자체로 모든 정의(justice)의 영역을 규율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다른 영역에 노력주의의 논리적 함축을 연장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혹은 보충적인 이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노력주의는 다원주의적인 이론 체계의 경제 영역에서 하나의 중요 원칙(principle)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 천재나 스포츠 천재의 노력 없는 성취(performance)에 경탄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이들은 누군가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천재성으로 성취를 보이는 경우 그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노력주의 하에서는, 천재들이 성취로 인하여 큰 명예, 명성, 영향력, 경외 등을 얻게 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천재들의 성취를 이유로 경제 체제의 투입(노력)에 대한 결과로서의 보상인 **소득**을 분배하여 줄 필요는 없으며, 성취만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 자체가 합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노력주의는 오로지 소득 분배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므로, 경험적 상태에 따라 이를 보충할 이차적인 이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각자가 노력한 만큼 보답받는다"는 노력주의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영역에서 직관적으로 정의와 공공선(common good)이 실현될 수 있는 경험적 환경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러한 좋은 상태에 도달할 수 없고 사회가 노력주의를 그대로 따른 결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anti) 직관적인 상황에 이른다면 이를 보충할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력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들을 고려한 보충적인 이차적 복지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층위를 달리하여,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제도화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공리의 저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각해진다면, 노력주의의 구현 과정이 점진적인 것이 되도록 설정하는 이차적 제도화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제4장에서 논의한다.

노력주의에 따른 소득 분배는 사회의 어느 단계(stage)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노력주의에 따른 소득의 분배는, 하나하나의 직장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분배의 범위는 **사회의 경제적 체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체제란 인간 사회의 물질적 생산, 유지, 번영과 관련된 일체의 체제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돈이 그 활동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활동, 예컨대 소위 “가계경제”에서 양육자가 돈을 받지 않고 육아하는 경우도 이러한 체제에 포함된다. 어느 곳에서 일하건,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일하건, 가정에서 육아를 하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그것이 경제적 체제의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인 한 그에 대하여서는 보상이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라 함은, (최소한 현 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세금의 징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육아를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직장에 속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회사로부터 주어지는 당장의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세금 징수로 마련된 재원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소득을 올리게 된다. 다만 국가는 노력을 많이 한 자로부터는 세금을 비교적 조금 징수하거나, 그 자에게 추가적 금원을 비교적 많이 지급할 것이다. 혹은 국가는 노력을 조

금 한 자에게는 세금을 비교적 많이 징수하거나, 추가적 금원을 비교적 조금 지급할 것이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어느 시기에 주어져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은 그 노력이 이루어진 순간 순간 지급된다.[10] 마찬가지로, 능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력에 대해서도 그 시기에 즉각 보상이 주어진다. **축적된 능력**의 경우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도 오랜 노력을 축적하여 법률 지식을 쌓았을 것이다. 노력주의에서는 변호사의 능력을 특별히 더 높게 평가하여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능력에 상응하여 높게 책정하지는 않는다.[11] 그러나 그가 그 능력을 가지기까지 투여했던 노력 정도에 대하여서는,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에 노동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대원칙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

제 3 절 대원칙 논증

대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자연적 재능(유전자), IQ, 사회적 배경, 가정환경 등을 포함하는 여러 운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소득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길수	상철	황준
뛰어난 재능	보통의 재능	형편없는 재능
노력 30	노력 50	노력 70
소득 70	소득 50	소득 30

[표 1: 능력주의의 분배(독해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배)]

10) 물론, 제도화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보상이 월급으로 주어질 수는 있다.

11) 또한, 농구를 잘하게 된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코딩을 한다거나 하는 능력은 노력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나름에도 분배와 관련한 모종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노력주의에 따르면 그러한 축적적, 직업적 능력 그 자체에는 보상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지는 않는다(다만,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보상한다).

[표 1]과 같은 분배를 상상해보자. 길수, 상철, 황준은 문서를 처리하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길수는 글을 굉장히 빨리 읽는 재능이 있고, 상철은 평균적인 속도로 글을 읽으며, 황준은 그러한 재능이 전혀 없어 느릿느릿 글을 읽는다. 그렇기에 길수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황준보다도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반면 황준은 거의 하루종일 일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별로 없어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능력주의에 따른 이러한 분배는 운에 의하여 소득이 거의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수	상철	황준
노력 30	노력 50	노력 70
“귀차니즘 유전자” O	“귀차니즘 유전자” △	“귀차니즘 유전자” X
소득 보정값 +20	소득 보정값 0	소득 보정값 -20
소득 50	소득 50	소득 50

[표 2: 운 평등주의의 분배(우연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분배)]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표 2]와 같은 분배를 상정해보자. 우연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버린 분배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한 운의 영향까지 모두 배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운의 영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할 마음을 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향을 발현시키는 가상의 “귀차니즘 유전자”의 영향까지 제거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귀차니즘 유전자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된 길수에게는 20의 소득을 더 주어야 하고, 이 유전자가 전혀 발현하지 않은 황준에게서는 20의 소득을 제해야 한다고 하자. 황준에게서는 불만이 나올 법하다. **“내가 가장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지?”, “왜 그 시간에 놀았던 길수, 상철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접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귀찮아하는 성향을 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황준은 더욱 강하게 불만을 느낄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직관인 것이다.

[표 1]에서처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배도 정당하지 않고, [표 2]에서처럼 우연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모두(혹은 일부) 제거한

분배도 충분히 정당하지는 않다. 일응 운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다고 하면 노력의 투입에 비례하는 분배가 산출될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러한 통념과는 다른 분배가 산출되는 것이다. 운의 영향을 모두 제거하든 안하든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잠정적으로 딜레마로 규정하겠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분배를 떠올려보자.

길수	상철	황준
노력 투입 30%	노력 투입 50%	노력 투입 70%
소득 30	소득 50	소득 70

[표 3: 노력주의의 분배]

[표 3]의 분배는 노력주의에 따른 분배이다. 오로지 경제 활동에 얼마나 노력을 투입했느냐에 비례하여 소득이 결정된다. 이러한 분배는 [표 1]의 능력주의에 따른 분배처럼 능력 외적인 운의 영향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표 2]의 운 평등주의적인 분배처럼 운에 의한 대부분의 영향을 제거하되, 최종적으로 일부 운의 영향은 남겨둔 것이다. 즉, 노력주의는 일반적인 운 평등주의의 분배와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는데, 바로 운의 **영향**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중 어떠한 영향을 제거하느냐이다.

글을 빨리 읽는 재능의 유무, 귀차니즘 유전자 유무 모두 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운에 의한 영향을 전부 제거하여 도출된 [표 2]의 분배는 무언가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나 직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난점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주의는 운에 의한 모든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지 않는다. 운에 의한 노력에 대한 영향과 운에 의한 노력 외의 것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고, 다음 중 **후자의 효과만을 제거**한다.

① 운에 의한 노력에 대한 영향(노력하려는 성향과 관련된 운의 영향)이, 소득 분배량 계산에 미치는 효과

② 운에 의한 노력 외의 것에 대한 영향(노력하려는 성향과 무관한 운의 영향)이, 소득 분배량 계산에 미치는 효과

노력주의에서는 운에 의한 노력에 대한 영향은 제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귀차니즘 유전자는 사람이 경제 활동에 노력을 어느 정도 투여하느냐에 분명히 많은 영향을 준다.[12] 그러나 노력주의는 그러한 귀차니

즘 유전자가 노력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유전자의 영향을 경제적 분배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분명 개인의 책임으로 선택하지 않은 요소에 의하여 조금은 경제적 분배가 영향을 받아, 각자에게 응분이나 책임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보상이 분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 의한 투입과 그에 대한 보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경제 체제에서, 분배가 개인의 노력 투여 정도가 아닌, 한 개인의 책임, 선택, 응분에만 상응하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책임, 선택, 응분이라는 특정 협소 도덕개념에 분배를 전적으로 연동시킬 이유가 무엇일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러한 영향에 의해 개인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전술 및 후술하듯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종적인 분배 형태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에, 굳이 그 영향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노력 능력**이란 바로 **노력 정도에 대한 운에 의한 영향의 총체**[13]를 지칭하는 것이며, 결국 **대원칙은 노력 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최종적인 노력 투입 정도를 보상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귀차니즘 유전자는 특정한 운의 영향을 논의하기로 위해 이론적으로 상정(stipulation)된 개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는 노력 능력 중 "운에 의한 층위 혹은 일면"을 짚기 위해 귀차니즘 유전자라는 가상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후술하듯이 노력에 미치는 "운의 영향"과 "의지의 영향"은 복합적으로 구별하기 힘들게 합쳐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노력 능력이다. 단지, 여기서는 노력 능력의 구성요소로서의 운을 고려하여 분배를 보정해야 한다는 점을 논한 것이다.

---

12) ADHD 유전자의 경우, 그에 의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람(예술가)이 있을 수 있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일부 사무직).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DHD 유전자의 영향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인 분배가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ADHD 유전자의 영향을 그대로 두게 되면 개인의 노동 역량 투여 정도에 과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일에 아예 집중하지 못하는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력주의에 대한 보충적인 경제적 복지 원칙에 의하여 ADHD의 치료약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13) 만약 존재하는 것이면, 이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

제 3 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위의 대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롤즈의 유명한 지적이 있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노력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는 것조차도 사실은 가정환경과 사회적 배경 등 운의 영향 하에 있으므로, 노력에 따른 분배도 운에 의한 임의적인 분배이므로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였다[14]. 물론 이는 일부 타당한 지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과연 노력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하는 의향, 그 운에 의한 영향의 총체는 경제적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요소로서 배제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설령 노력 능력이 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에 따른 노력에 모종의 가치가 담겨 있다면, 최소한 다른 종류의 능력의 영향은 소득계산에서 배제하더라도, 노력 능력에 따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대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흔히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일화에서와 같이, 우리는 삶에서 일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밑에는 두 가지 직관이 깔려 있다. 첫 번째는 **사회의 경제 체제에 대한 개인의 투입(input)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대가(reward)가 주어져야 한다는 직관**이다. 경제적 협동체제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 및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체제 혹은 팀플레이에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기여(contribution)를 하느냐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설령, 사회를 파편화된 개인의 모임으로 파악하더라도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회라는 커다란 기계 혹은 메커니즘에 A를 넣으면 그것과 무관한 B'가 아닌 투입과 비교적 유관한 A'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교환

---

14) "Even the willingness to make an effort, to try, and so to be deserving in the ordinary sense is itself dependent upon happy family and social circumstances."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p.74.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직관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기여에 관한 이론과는 다르게 노력주의는 절댓값으로서의 기여가 아닌 각자에게 **상대화된 값으로서의 기여** 정도에 보상하는 체계를 상정한 것이다. 물론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직관은 보통 그 기여가 일종의 결과이고, 그 결과에 대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나타난다.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결과를 핵심으로 하는 기여 개념은, 운 평등주의가 숱하게 지적하여 왔듯이 너무 운의 요소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단점을 함축**한다. 그렇기에 노력주의는 기여를 상대적 투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운에 의하여 어느 사회적·자연적 상태에 놓이더라도, 개인은 그러한 자신의 한계 내에서 노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롤즈의 지적 혹은 롤즈의 이론 체계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자신의 실제 특성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로 모종의 경제 분배 체제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예컨대, 롤즈식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개인들은 롤즈의 두 원칙이 아니라 노력주의를 고를 수 있다. 랜덤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놓여 있다가 베일을 걷었을 때, 개인은 자신이 그 **어느 현실적 상태에 놓이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분배**를 받으면 그만일 것이고, 그게 자신과는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타인의 삶과 경제적으로 불필요하게 연동되지 않는 방식이다. 자신이 교환 혹은 협업을 할 뿐인 존재와 마치 다른 모종의 이유로 연관되어 있다는 듯이 그에게 필요 이상의 몫을 주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력주의는 롤즈 정의론의 두 번째 원칙, 즉,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끔 하여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주의에 따르면 각자는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자신의 노력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노력을 발휘할 것이냐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택지이

고, 오히려 노력 능력을 이루는 운의 영향조차 제거하는 것이 더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의 노력-고삐 채우기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두 번째 직관은, 사회적 경제 체제에서의 교환 관계를 떠나, 그저 덜 노력하는 사람이 재화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배 체계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직관이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덜 열심히 일했음에도 덜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거나 혹은 더 많은 대가를 준다는 것은 공정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반한다. 심지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여가**를 누림과 동시에, 물질적인 대가도 챙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총합적으로는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노력의 기회는 보장**되며, 그저 자신의 역량의 한계 내에서 일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얻어낼 수 있으며, 심지어 최대치의 역량을 투입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최대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도 보장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동일 수준의 소득**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노력주의에서는 각 개인이 다음과 같은 예시로 나타날 수 있는 분배 체계에 의하여 소득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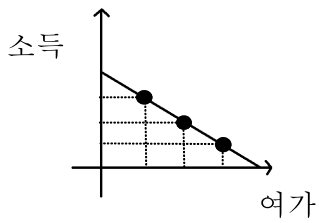

[그림1: 소득 가치 > 여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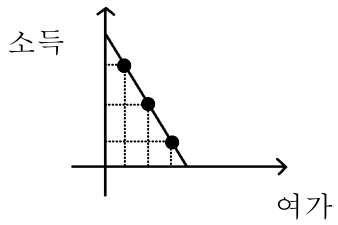

[그림2: 소득 가치 < 여가가치]

노력 가능 역량을 투여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개인이 누리는 여가의 총체는 노력 가능 역량에서의 노력 투여 정도 외의 잔여분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개인은 그래프 위의 점으로 표시되며, 선택에 따라 선 위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선의 기

울기는 교환비를 의미한다. 이론 구성에 따라 기울기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소득은 노력 가능 역량의 투여분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은 **동일한 기울기 조합**의 소득-여가 총체(income-leisure bundle)를 지니게 된다.

다만 동일한 기울기 조합의 소득-여가 총체를 얻는다함은, 모두가 완전히 같은 양의 소득과 여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력 가능 역량이 절대적으로 큰 사람, 즉 절대적으로 투여 가능한 노력의 총량이 큰 사람은 그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은 사람에 비해 같은 비율로 일하고도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15] 이를테면 노력 가능 역량의 절댓값이 150인 사람과 100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똑같이 50%의 역량으로 노력을 투여하면 양자는 정확히 같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노력 가능 역량이 150인 사람과 100인 사람이 일하고 남은 여가의 크기는 각자의 50% 역량분에 해당하는 75와 50으로 다른 것이다. 다만 노력 가능 역량의 크기만큼 여가의 크기가 큰 사람은 반대로 동일한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절댓값의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더 큰, 혹은 더 작은 노력 가능 역량을 지녔다는 것은 개인에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므로 모두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특정한 버전의 결과적 평등을 가져온다.

15) 이론상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여기서 여가란, 일에 투여하지 않는 시간과 에너지의 총체 등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이론적 위치 짓기

제 1 절 운 평등주의의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

본 절에서는 노력주의가 운 평등주의에 비해서 가지는 핵심적인 장점이 무엇인지 논하여 그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운 평등주의에 대해 제기되었지만 노력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검토한다. 한편, 능력주의와 노력주의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노력주의는 보통의 능력주의에 비해 강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는 그 이론적 정의(定義)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특성 - 노력주의는 대부분의 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소득 분배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운 평등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비판으로, "노력-고삐 채우기(effort-harnessing)의 문제"가 있다.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란, 운 평등주의에 따르면 무능한 자들이 소득 재분배를 받아야 하므로, 유능한 자들이 덜 유능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강제된다는 주장이다. 즉, 운 평등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일종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운 평등주의의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

P_1 : 운 평등주의는 주어진 운에 의해서 누군가가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다.

P_2 : 따라서, 운 평등주의에 따르면 비교적 어떤 운(재능 등)이 결여된 사람들(무능한 자들)은 소득을 재분배 받는다(다른 방식으로 무능한 자들의 열악함을 해소할 부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전제한다[16]).

P_3 : 한편, 유능한 자들은 무능한 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생산한다.

P_4 : 그러므로, 무능한 자들에 대한 보상은 유능한 자들이 생산한 부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leftarrow P_2+P_3$)

---

16) 예를 들어, "manna from heaven" 시나리오는 배제한다.

P_5 : 이에 따라, 유능한 자들의 노동 활동 중 일부는 무능한 자들에게 이전될 경제적 부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된다.
P_6 :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노력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기에, 이로부터 발생한 생산물도 그 사람이 온전히 소유해야 한다. (자기 소유 논제)[17]

C : 운 평등주의는 유능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노동하도록 만든다. ($\leftarrow P_5+P_6$)

노력주의에서도 특정 형태의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유능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에 비해서 경제적 생산력이 더 높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자들의 잉여 생산을 무능한 자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분배 제도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주의는 노력-고삐 채우기 문제의 핵심적인 직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력주의가 지니는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력-고삐 채우기의 문제는 일종의 무임승차의 문제인데, 무임승차가 특히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팀플레이의 과실을 누린다는 점에 있다. 흔히 대학 팀플레이 과제에서 무임승차자를 비난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무임승차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하였음에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18] 오히려 열심히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을 때 비난의 강도는 강해진다. 주원이는 열심히 자료 검색을 하고 글도 썼고, 내 옆의 도용이는 일은 못해도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PPT라도 만들었는데, 무임승차자 한산이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력주의에 따르면 오로지 개인이 노력한 만큼 그에게 경제적 재화를 분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노력함

---

17) 스튜어트 화이트. (2007). *평등이란 무엇인가.* 강정인, 권도혁 옮김, 까치, 153면.

18)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조원의 경우가 아닌 이상, 열심히 하는 것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예컨대, 능력이 너무 부족한 우용이의 경우, 그에 대하여서는 팀이 도움을 준다는 입장으로 조별과제가 수행될 것이다. 이는 후술할 보충적인 복지 이론의 도입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없이 무상으로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는 노력주의가 노력 능력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노력주의에서는 개인이 (다른 능력은 아니더라도) 노력 능력만큼은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한다고 본다. "노력을 야기하는 모든 운의 영향"과 "노력을 하기로 하는 개인의 의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 두 가지의 총체인 노력 능력의 산출물인 노력 그 자체를 보상함으로써, 노력주의는 운 평등주의와 긴장 상태에 있는 자기 소유 논제의 핵심적인 직관 - 노력 혹은 노력을 유발하는 요인의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 을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력 능력은 "능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으나, 이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한다기보다, 노력을 위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야기하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운과 의지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다. 노력 능력이란 매순간 의지를 발현시키는 요인의 총체인 것이다.

다른 능력과 달리 노력 능력이 개인의 소유인 것으로 놓여야 할 논리적 구분점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는 최소한의 것인 노력 능력은, 의지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능력들의 발현을 추동하는 기저, 혹은 다른 능력의 일부로서 그 능력이 구현되도록 하는 역할로 기능한다. **노력 능력**은 개인의 의지 및 자유로운 결정 하나하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의지 및 결정 하나하나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발현되고 존재하게 되는 능력**이다. 앞서 제2장 제2절의 예시에서 황준이 귀차니즘 유전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보정하여 덜 노력한 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노력 능력의 경우 매순간 개인이 스스로 노력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것인지 하나하나 결정하여 존재하게 되었기에 결국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서 자체적인 소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 능력이 개인의 결정 하나하나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다함은,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고 함양되었다는 의미[19]가 아니고, 개인의 노력 능력이 결정 70%와 운 30% 정도로 구성되

19) 예를 들어, 연습을 통해 습득한 농구 드리블 실력은 그렇게 구성된다.

었다는 식의 의미도 아니다. 이는 사람은 매순간 더 이상 의지를 발현할지, 그러한 의지의 발현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발현 자체가 설령 운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일련의 선택으로서의 노력"을 야기하는 노력 능력이란, 결국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의 결정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력주의의 입장에서는, **개인은 사회의 경제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산출물인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경제적 부의 획득은 사회적 체계 덕분에 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은 노동의 결실이 오로지 자기의 능력 덕분이라고 고집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위 논변의 명제 P_6가 일부 부정되는 것이다. 오히려 노력주의는, 개별 인간의 능력이 여타 모든 인간의 능력과 사회구조의 총합에 비해 비교적 미약함을 들어, 사회적 체계의 역할을 크게 본다.[20]

즉, 개인은 사회의 경제 체제에 복무하기에,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체제 자체가 존재하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관한 능력일 뿐이며, 이를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내어도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순간 그 가치를 독점적으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물론 노력주의의 구상에 따르면 사회의 경제 체제에 우리는 나름의 기여를 한다. 그러나 그 기여의 절대적 크기는 무수한 자연적 재능 등, 기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즉, 절댓값으로서의 기여는 운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역량이 지닌 한계치 아래에서 얼마나 노동을 하느냐**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능력에 한하여서는 개인이 소유하지만, 그 외의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 특히, 이러한 직관은 현대 사회와 같은 복잡한 경제 구조에서는 여러 생산 단계와 유통과정을 거쳐야만 개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 큰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제 2 절 존 로머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평탄화 이론

노력주의와의 두 번째 비교대상은 존 로머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평탄화(leveling the playing field) 이론이다.[21] 이는 노력주의와 동일하게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비교적 최신의 운 평등주의 이론이자, 노력을 경제적 분배 체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이론이다. 이 이론과 노력주의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노력주의를 추가적으로 논증하면서 그 장점을 드러내겠다.

로머에 따르면 개인은 그 자신의 순수한 선택과 노력에 대해서만 온전히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르는 경제적 몫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지닌다. 따라서 순수한 선택과 노력에 비례해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로머는 정치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을 사회과학적으로 구현하였다. 그는 우연한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후, 순수한 선택과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로머는 먼저 각 개인을 여러 층위의 사회적 집단으로 분류했다. 각 집단은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배경과 자연적 재능 등의 운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다. 각 집단 내에 각각 일정한 숫자의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속 집단에서 몇 번째 순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노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등한 재능과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간에는 출발점이 같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출발선에서 얼마나 나아갔느냐를 상대적 순위를 통해 측정하면 그 사람의 순수한 선택과 노력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되더라도, 집단 내에서의 순위가 동일한 사람들은 동등한 소득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의 재산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동일한 IQ를 지니고,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등의 여러 동일한 특성을 공유

---

21) Roemer, J. E., & Trannoy, A. (2015). Equality of opportunity.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217-300). Elsevier. Roemer, J. E. (1998).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구성해보자. 누군가 그 집단의 100명 중에서 20등을 했다면, 그에게는 그 순위에 따르는 소득이 주어진다. 즉, **모든 100명 중의 20등들**에게 주어질 것과 동일한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로머의 이론은 운 평등주의를 사회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로머의 이론과 노력주의는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는데, 이는 바로 로머의 이론은 앞서의 대원칙에 대한 논증에서의 딜레마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머의 이론은 개인의 순수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우연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에 대한 운의 영향도 배제된다**. 따라서 로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상의 존재이나) "귀차니즘 유전자"와 같은, 노력에 영향을 주는 운적 요소 혹은 어떤 요인의 운적 일면의 영향을 받으면, 덜 노력한 자가 더 노력한 자에 비해서 나은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로머의 이론에 대해 치명적인 비판이 존재하는데, 바로 운의 영향을 모두 제거하고 순수한 선택에 의한 것만을 분배 기준으로 남기는 이론 체계를 구상하였을 때, 과연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자연적·사회적·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기계적 혹은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야기되는 것이고, 인간의 순수한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면,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경제적 부를 분배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론을 구상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운동장의 기울기를 맞추어 놓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한 자리에 모일 뿐(완전한 결과적 평등)이라는 함축만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로머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운 평등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노력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노력 능력을 포착하고, 이를 구성하는 운의 영향을 모두 경제적 분배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 살려두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순수한 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모든 것이 인간 외재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분배의 차이를 만드는 기제는 합당하게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노력주의에서는 노력이라는 것이 꼭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식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전적으로 발현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각 개인은 차등이 있는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노력주의에 따르면 운에 의한 영향을 어느 정도 제거할 것을 개념적으로 상정하면서도, 자유의지·결정론·양립가능론 등의 철학적 대립 구도에서 특정한 입장을 정해야할 것을 강요받지 않게 된다.

로머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로머의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이 사회에 필요한 직업에 종사할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비판이다. 로머의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면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유인이 없다. 예를 들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거나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즐겁게 일상을 보내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단순 반복적인 서류작업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경제 체제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후자임에도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한 직업에 대한 수요와, 그러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급에 의해서 그 직업의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어 공급이 적은 직업이나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여 공급이 적은 직업 등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급여가 상승해 그 직업에 종사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노력 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를 분배하도록 하는 로머의 이론에 대해서 특유하게 가해지는 비판인 것이다.[22]

다시 말해, 로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꼭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

22) Roemer, J. 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er 12. 이 문제는 적극적 재분배를 통해 모두가 어느 정도의 충분한 부와 소득을 갖출 수 있는 이론들에서, 만약 사람들이 그러한 충분함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모두가 그러한 충분한 부와 소득을 갖추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을 전제한다.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은 그저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여 소득을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 체제는 필요 역할들이 수행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다. 누군가는 지루한 서류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로머의 이론이 분배정의이론으로서 실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격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등과 유사한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비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이 경제 체제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직접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로머의 이론은 제도적 차원에서 특정한 방식을 상정할 수밖에 없어 그 이론적 함의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노력주의는 로머의 이론보다는 더 나은 위치를 점한다. 첫째, 노력주의는 최종적인 부의 분배에 있어서 사회의 경제 체제에 대한 노력 투입 정도에 따라 소득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로머의 이론이나 다른 일반적인 기회의 평등이론들과는 달리 **직업 획득에 있어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직업의 인기가 높다면 모종의 경쟁을 거쳐 선발되도록 하여 비교적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뿐일 것이다.[23] 즉, 노력주의는 직업 성취의 기회가 아니라 최종적 소득 획득의 기회에 관하여서만 평등을 추구한다. 그 이전 단계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노력주의는 위 문제와 무관하다.

부차적인 경험적 논의이지만, 노력주의의 노력 가능 역량 중 각 개인의 실제 노력 투여 정도에 비례해 소득이 분배되도록 한다는 이론적 구성은 특정 직업의 인기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여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투여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 일이나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지루한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고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하며, 더러운 오수 처리장을 정화하는

23) 현대와 마찬가지이다.

일을 하는 사람은 액취로 인하여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 노력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기 마련이므로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일을 할 유인이 각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제 4 장 남은 문제들

이 장에서는 노력주의 및 그 대원칙을 보충하는 추가적인 논의들을 다룬다.

첫째,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문제**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경험한 삶의 경로에 따라서 일을 위하여 노력할 의지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노력 능력 자체를 거의 혹은 완전히 상실한 경우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기도 하고 길에서 접하기도 한다. 그런데 노력주의의 대원칙 하나에만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득도 분배해서는 안 된다거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의 소득만을 분배해야 한다(경제적 분배량이 0 혹은 0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는 결론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력주의는 운이 좋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체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노력주의에 따른다고 하여서 이와는 별도로 사회가 복지 이론 혹은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제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노동 의지를 가지도록 하려는 사회적 설계에도 불구하고 노동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 일련의 복지 체제를 통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생각건대, 노력주의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분배체계를 인식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의 발휘 정도가 체제 도입 이전보다 월등하게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는 삶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을 때, 혹은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람은 노력하기를 단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력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소득에 관하여 모두 같은 수준의 전망을 지니게 된다.

각자가 자신의 노력을 어느 정도를 투여하느냐에 따라 가히 기계적으로 경제적 분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력을 단념했던 수많은 사람의 전망은 노력주의 이론과 체제의 도입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물론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와는 다르게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나아지는 한에서 경제적 상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관대한 이론이 적용된 체제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수혜자가 더 나은 처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롤즈의 체제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력주의에 비하여 최소수혜자를 비롯하여 상당수 하위층의 노력할 의지를 저해할 요인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하위층은 비교적 쉽게 상위층에 고삐를 채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력주의에서 소득 차이가 급간별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답하지 않고 열린 상태를 상정한다. 노력주의는 노력 투여 정도 간 소득 보상 차이를 좁게 함에 따라 매우 평등주의적인 기획이 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어느 정도 크게 함에 따라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매우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획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급간별 소득 보상의 차이가 클 경우 그 자체로도 불평등하지만, (노력주의가 경제적 분배만 규율하기 때문에) 노력에 따른 소득 차이를 두는 것 자체만으로 유의미한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할 것이다. 큰 경제적 불평등이 큰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경제적 불평등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버는 사람과 32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20만원의 격차 때문에, 320만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원을 버는 사람에 비해 어학학원을 하나라도 더 다닐 수 있다. 그 20만원의 격차 때문에, 3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대통령 선거 당일에도 투표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유인이 조금이나마 더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작은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전혀 야기되지 않거나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만 야기되도록, 대원칙에 덧붙여 또 다른 원칙을 추가할 수는 없다. 이는 소득 격차를 전제하는 대원칙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본질적인 것이라거나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막는 이론적 장치가 추가되어야 할 수는 있다. 여기서 이러한 장치를 추가한다거나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화될 경우에는 그 불평등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 토머스 스캔론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를 제시한다.[24][25]

① 경제적 불평등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신분질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강한 신분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

②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입 컨설팅을 받아 남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재산을 축적하여 타인을 부당하게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

24) Scanlon, T. (2018). *Why does inequality matter?*. Oxford University Press.

25) IDEAS.TED.COM, The 4 biggest reasons why inequality is bad for society[Website]. (2020, May 31). https://ideas.ted.com/the-4-biggest-reasons-why-inequality-is-bad-for-society 참조.

그 매체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

④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정치 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로비가 문제가 될 것이며, 한국에서는 정치 후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스캔론의 논의에 따라 참을 수 없는 정도를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즉, 용인불가능성이란 경제적 격차에 의해 ① 확고한 사회적 신분 질서가 생기거나 ②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이 야기되거나 ③ 누군가 타인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나 ④ 정치적 주권이 침해될 정도로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이 다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①-④에 따르는 용인불가능성의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 속 사안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의는 거시적인 적용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시적인 사안들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리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념적으로 노력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념적으로 (노력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여타의) 운의 영향을 배제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실제로 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노력주의에서의 노력 능력이란 노력을 유발하는 요인의 총체를 의미하고, 이것은 "선택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과 "운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합한 개념이므로, 굳이 선택으로 인한 노력과 운으로 인한 노력을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노력주의에서는 책임과 선택이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필연적인 근거**는 아니므로[26] 순수한 책임과

26) 노력주의에서 선택과 책임의 개념은 노력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후의 조셉 피쉬킨의 말처럼 비유컨대 노력 능력의 일면이 100% 운에 의한 것이고 다른 면은 100%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더해 선택도 노력 능력의 핵심(**노력은 일련의 선택이며, 노력 능력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발현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면, 노력 능력에 대한

선택에 의한 노력을 포착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한편, 노력주의는 로머의 이론과 그 설계적 특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에, 제도 구현 단계에서는 결국 노력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다.

조셉 피쉬킨(Joseph Fishkin)은 사람이 지닌 장점(adavanteage; 본 노력주의 논의에서의 "능력"과 유사한 개념)은 60% 운에 의하여 구성되고, 40% 선택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100% 선택에 의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100% 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27] 어떤 사람의 능력(예컨대 수학을 배우는 능력)을, 그 이전 시점에 운에 의한 것(어떤 대학교를 다녔는지)과 운에 의하지 않은 것(순수한 노력 정도)으로 영향을 준 요인을 구분하여 따져보면, 결국 운에 의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이전 시점에 운에 의한 것(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느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고, 시간을 아무리 돌려도 결국 태어난 시점의 운의 요인인 가정환경 등에 의하여 모든 이후의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만 나온다. 결국 복잡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시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운에 의한 것인지, 어느 정도 운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은 그 모든 것에 의하여 완전히 영향을 받아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피쉬킨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그 구분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였다는 이론적 단점은 코헨(G.A. Cohen), 드워킨(Ronald Dworkin), 롤즈의 경제 분배 이론에서 모두 실제로 나타나거나, 예지된다(anticipated). 그러나 앞서 설명한 로머의 이론에서만이 이러한 단점이 나타나지 않는데("the most innovative attempt to cut through this problem in recent years is the conception of equal opportunity proposed by John Roemer"[28]), 그 이유는 로머의 이론은 능력을 구성하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로 선택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 능력을 구성하는 것 중 운과 선택의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7) Fishkin, J.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56-65면(I.C.2.)의 논의 참고.

는 것 중 운과 운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이를 통하여 계산된 최종적인 결과(outcome)가 어떻게 되어야 공정하다는 식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결과를 측정하여 그 이전에 능력을 통해 선택이나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로머의 방식에 따르면 어떤 능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에 의한 부분과 노력이 아닌 부분에 의한 것을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구분을 통하여 능력 혹은 장점 개념을 명확화하는 작업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 자체가 있다고 상정한 뒤 그저 결과를 파악하여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역으로 측정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노력주의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건들은 그 이전의 사회적 요소, 가정환경 요소, 유전적 요소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은 이전 시점으로부터의 요인들의 영향으로 구성될 것이고, 현 시점에도 주변의 많은 요인에 의하여 노력 정도가 시시각각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노력주의에서는 노력 능력 중 운과 선택을 실제로 구분하거나 그 영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노력 정도만을 파악하면 되기에 분배 계산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넷째, **측정의 문제**이다. 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달라져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 정도를 측정하여 이론을 실현할 것인가? 이는 앞선 셋째 문제와 관련된다.

로머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노력주의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앞서 로머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설명하였듯이, 그의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균질적 특성을 지닌 개인들로 집단을 구성하고, 개인이 소속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덜 성과

28) Fishkin, J.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61면.

를 이루었는지를 측정하면 된다. 로머에 따르면 그의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각 개인이 운의 영향 바깥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즉, 개인의 선택이 연속되어 결국 각 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로 모델의 설계를 살펴보면 **로머의 사회과학적 측정 방식은 노력 능력이 주는 영향은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① 로머가 별도로 노력 능력의 영향을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② 사실상,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운의 요인을 중립화(neutralize)하지 않는다면 노력 능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로머가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③ 어쩌면 만약 모든 운의 요인을 중립화하게 된다면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 하는 선택은 전부 동일하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측정 결과도 모두 유사할 것이므로 애초에 측정을 하는 의미가 없을 것인데, 로머가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로머의 측정 방식은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운에 의해 일면이 구성되는 노력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에 더욱 적합한, 노력주의 이론을 구현하는데 더 맞는 모델**인 것이다.

물론, 로머의 측정 방법을 그의 이론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변수를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로머의 측정 모델은 일부 운의 변수를 선정하고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한 요인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것이 경제·사회통계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로머도 운의 요인을 한정적으로 몇 가지(부모의 학력 등)만 설정하면서 그러한 몇 가지 운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로서의 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로머는 임의적인 운의 영향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작업이 "현대 사회를 공정 그 자체에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말한다.[29] 노력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신학교,

---

29) Roemer, J. E. (2003). Defending equality of opportunity. *The Monist*, 86(2). 261-282. 참조. 276 - 277면에서는 자신의 이론을 "rule of thumb"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280면에서는 그의 이론이 "**would bring**

부모님의 직업 등 특정한 운의 요인들 자체를 하나씩 중립화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결과적으로 남는 노력의 정도로서의 집단 내 개인의 성취를 백분위로서 측정하고 그 이후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물론, 노력주의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머 식으로 각 요인들을 중립화한다고 하여도, 완전히 무한한 모든 요인들을 중립화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어떠한 노력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외의 기타 운의 영향까지가 완전히 중립화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노력주의에서도 로머의 측정 방식을 구현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 능력에 따른 노력의 정도를 근사치로서 측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로머의 언급대로 이러한 근사치 측정이 공정성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그 나름의 의미가 적지 않다.

게다가 능력을 구성하는 것 중 운과 선택의 구분불가능성에 관한 앞선 피쉬킨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로서의 노력을 측정하는 방식(로머의 방식 등)이, 경제적 분배에 대한 대부분의 혹은 모든 운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론 중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방법이라는 점도 노력주의의 강점을 부각시킨다.[30] 경제적 공정성

---

contemporary societies closer to justice than what currently exists"라고 언급한다. 이는 로머 자신이, 선택과 책임에 완전히 상응하는 보상 분배 체계를 최선의 분배 체계로 상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언급이기도 하다. 노력주의와는 다르게, 실제로 로머는 자신의 저작 전반에 걸쳐서 운의 영향을 벗어난 선택, 책임, 응분에 따른 분배만을 구상하기도 한다.

30) 앞서 각주 5)를 통하여 실험적으로 구상하였던 대로 노력 능력의 발휘가 시간, 신체적 힘, 정신적 힘의 발휘 등으로 구성된다면 가정하면,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두 가지 측정 방식을 추가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주관적 측정 방식**이다. 앤절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는 노력주의의 정신적 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인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로서의 "그릿(grit)"을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릿 척도(grit scale)를 구상하였다. 질문지에는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1-5의 점수로 급간화 된다(앤절라 더크워스. *그릿*. 김미정 옮김. 비즈니스 북스. 참조).

물론 굳이 그릿 척도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적 에너지

은 그 자체를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그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섯째, **제도화의 문제**이다. 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 사회는 어떤 경제적 분배 제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를 실제로 제도화하는 것이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변동이라는 결과를 감수해야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노력주의는 다른 경제 분배 원칙의 도움 없이 오로지 홀로 경제적 분배를 결정하는 원칙일 것인가?

노력주의를 유일한 경제 분배 원리로서 완전히 구현하는 사회는 아마도 지금의 시장 경제 체제와는 많은 것이 다를 것이다. 경제적 재화의

의 투여량을 살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한 질적 방법론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솔직함에 어느 정도 기대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바뀌게 되는 노력주의 하에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매우 집중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주관적 응답이 필요없는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체력의 경우에는 열량소비량을 재는 등의 방식으로, 정신적 에너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호르몬 분비량을 재는 방식 등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스트레스의 경우 코르티솔(cortisol) 호르몬이 스트레스 양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점점 의학 영역에서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 응답 방식이 아닌 코르티솔 측정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의 노력 정도를 이론에 따라 상시 완벽히 측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상용화 한다는 것에는 과학기술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근미래에 이러한 측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King, S. L., & Hegadoren, K. M. (2002). Stress hormones: how do they measure up? *Biological research for nursing, 4(2)*, 92-103; Dinse, H. R., Kattenstroth, J. C., Lenz, M., Tegenthoff, M., & Wolf, O. T. (2017). The stress hormone cortisol blocks perceptual learning in humans. *Psychoneuroendocrinology, 77*, 63-67. 참조).

희소성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지는 점은 동일할 것이겠지만, 이러한 재화를 사고팔아서 개인이 얻는 잠정적인 소득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하여 노력 순으로 완전히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의 상속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양육도 각자에게 재분배된 경제적 부를 활용하는 것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 물론 노력주의 사회는 운 평등주의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에 비하여 현 사회와 그 제도적 간극이 덜할 것 수 있겠지만, 노력주의에 따르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변동이 수반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노력주의에 의한 경제적 분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변동 과정에서의 공공복리 저하나 (현 시대에서의) 재산권 및 교육권의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지만, 변동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최소한 노력주의는 다른 경제적 분배 원칙과 **함께** 이 사회를 규율할 원칙으로서 남을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노력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체제의 변동을 감수할만하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변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본고에서는 노력주의가 분배정의이론으로서 지니는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대원칙을 논증하였고 2) 유사한 다른 분배정의이론들과 비교하여 노력주의를 한층 더 깊게 논증하면서 그 우수성을 주장하였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주의에 가해질 수 있는 이론적 비판을 다루고, 노력주의를 현실에서 제도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1) 대원칙을 논증하면서는 운의 영향에 대한 고정적인 틀을 깨고 운에 의한 노력에 대한 영향과 그 외의 것을 구별하여 이론을 설계하는 것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2) 다른 분배정의이론들과의 비교과정에서는 노력주의를 운 평등주의 및 로머의 이론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노력주의만의 고유한 장점을 짚어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 노력주의를 새롭고 타당한 형태의 분배정의이론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력주의의 소득 분배의 계산에서 그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노력에 대한 운의 영향이 아니다. 배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회적 요소나 유전자 등과 같은 운이 그 자체로 노력을 통하지 않고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 것이다. 또한, 노력주의에서는 노력 능력을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선택의 영역에 모든 면에서 완전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노력 능력은,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운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주의에서는 선택의 논리를 이론 전부를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 논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운 평등주의의 단점은 "선택과 운이 능력을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지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없음에도 그 구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였다는 점"에 있고(앞선 피쉬킨의 운 평등주의 지적), 그렇다면 실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운의 복합체인 무언가이므로, 노력주의는 그 구별불가능성을 역으로 인정하고 아예 그 복합체 자체(노력 능력)를 중심 개념으로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노력주의는 운 평등주의와 이론적인 결과적 중복(collapse)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피쉬킨의 주장처럼 마치 비

유컨대 노력 능력의 일면이 100% 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일면은 100%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그에 더해 선택이 어떤 층위에서는 완전히 노력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노력은 일련의 선택이고, 선택으로 인하여 노력 능력이 발현되고 존재하게 됨)에 의하여, 노력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는 인정될 수 있다. 노력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를 이론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구성하는 운과 의지를 명시적으로 개념 구분할 필요도 없으며, 경제적 보상이 결과로서의 노력 자체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이상 이러한 개념 구분의 이론적 불필요성은 유지된다.

노력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속 연구 과제가 있다. 노력주의를 보충할 복지 이론은 대원칙의 하위 원칙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노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소득을 분배할 것인가, 노력주의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 문화적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등이다. 노력주의는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소득에 대한 경제적 분배 이론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여러 영역에 관한 총체적인 분배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도서

스튜어트 화이트. (2007). *평등이란 무엇인가*. 강정인 · 권도혁 옮김. 까치.

앤절라 더크워스. *그릿*. 김미정 옮김. 비즈니스 북스.

존 롤스. (2003).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Dworkin, Ronald. (2000). *Sovereign Virtue: Equalit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Fishkin, J.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Roemer, J. E. (1996).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Roemer, J. 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anlon, T. (2018). *Why does inequality matter?* Oxford University Press.

Scheffler, Samuel. (2010). *Equality and Tradition: Questions of Value in Moral and Political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her, G. (1987). *Desert* (Vol. 3). Princeton University Press.

Kymlicka, W.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White, S. (2007). *Equality (Vol. 12)*. Polity.

Young, M. D.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Transaction Publishers.

논문

Anderson, E. S. (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2), 287-337.

Brighouse, H., & Swift, A. (2009). Educational equality versus educational adequacy: A critique of Anderson and Satz.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6(2), 117-128.

Cohen, G. A. (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pp. 906 - 944.,

Cummins, R. C. (1998). Reflection on reflective equilibrium.

Daniels, N. (1978). Merit and meritocracy. *Philosophy & Public Affairs*, 206-223.

Daniels, N. (1979).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theory acceptance in ethics. *The journal of philosophy*, 76(5), 256-282.

Dekker, T. J. (2009). Choices, consequences and desert. *Inquiry, 52(2)*, 109-126.

Dinse, H. R., Kattenstroth, J. C., Lenz, M., Tegenthoff, M., & Wolf, O. T. (2017). The stress hormone cortisol blocks perceptual learning in humans. *Psychoneuroendocrinology, 77*, 63-67.

Hurley, S. (2002). Roemer on responsibility and equality. *Law and Philosophy*, 39-64.

Inha, R., Lacadie, C. M., Constable, R. T., & Seo, D. (2016). Dynamic neural activity during stress signals resilient cop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31), 8837-8842;

King, S. L., & Hegadoren, K. M. (2002). Stress hormones: how do they measure up? *Biological research for nursing, 4(2)*, 92-103.

Li, S., Weerda, R., Milde, C., Wolf, O. T., & Thiel, C. M. (2014). Effects of acute psychosocial stress on neural activity to emotional and neutral faces in a face recognition memory paradigm. *Brain Imaging and Behavior*, 8(4), 598-610.

Roemer, J. E. (2003). Defending equality of opportunity. *The Monist*, 86(2), 261-282.

Roemer, J. E., & Trannoy, A. (2015). Equality of opportunity.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217-300). Elsevier.

Scanlon, T. M. (2014). Plural Equality, 1-21.

Singer, P. (1974). Sidgwick and reflective equilibrium. *The Monist*, 490-517.

웹사이트

IDEAS.TED.COM, The 4 biggest reasons why inequality is bad for society[Website]. (2020, May 31).
https://ideas.ted.com/the-4-biggest-reasons-why-inequality-is-bad-for-society/

Abstract

Effortism

Seokjun Lee

Department of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ffortism is a philosophical economic theory that asserts income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how much of one's "effort ability" is actually use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effortism, an individual's income should be determined by how much effort one made. Effortism, in the economic system of society, standardizes labor input that varies by individual, converts it into a relative input value, and views it as each individual's own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system. Furthermore, in determining economic distribution, effortist does not exclude the influence of "what constitutes effort" among the effects of luck. Effortist rather accepts that there is self-ownership of "the talent to make an effort". As a result, effortism ha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advantages compared to the latest discussions of luck egalitarianism and meritocracy.

Keywords : Effortism, Luck-egalitarianism, Meritocracy, Effort, Income, Distributive justice

Student Number **: 2017-25504**